

제271회 거창군의회의 정례회

조례안

(15건)

거창군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23-66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행정과)	1
2023-67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민원소통과)	7
2023-68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11
2023-69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17
2023-70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기업과)	31
2023-71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기업과)	39
2023-72	거창군 문화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문화관광과)	47
2023-73	거창군 고령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안 (행복나눔과)	51
2023-74	거창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행복나눔과)	61
2023-75	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보건정책과)	65
2023-76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총괄과)	69
2023-77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총괄과)	73
2023-78	거창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전총괄과)	93
2023-79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전총괄과)	99
2023-80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도사업소)	105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66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거주시설 운영,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비함(안 제2조)

나. 후생복지시설 운영 대상 확대함(안 제6조)

- 1) 무주택 소속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거주시설
- 2) 그 밖에 군수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다. 후생복지 사업의 현행화 및 확대함(안 제7조)

- 1) 장제용품 등 장제비 지원 ⇒ 장제비 지원
- 2)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신설
- 3) 출산축하 기념품 지원 ⇒ 출산·생일 격려품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공무원법」 제77조
- 2)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나. 예산조치: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50백만원 확보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4. 19.~5. 9.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불입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공무원”을 “소속공무원”으로 “사용하는”을 “사용하여”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무주택 소속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거주시설
- 4. 그 밖에 군수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제2호·제5호·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장제비 지원
- 5.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 7. 출산·생일 격려품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양소 등 이용료 및 생일 격려품 지원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5호의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과 같은 조 제7호의 생일 격려품 지원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u>공무원</u>이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u>사용하는</u>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있어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복지 혜택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군수와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 2.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건강관리실 등 <u><신 설></u> <u><신 설></u> ② 군수와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콘도, 휴양소 등의 이용권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와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u>소속공무원</u>이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u>사용하여</u>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있어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복지 혜택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군수와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 2.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건강관리실 등 3. <u>무주택 소속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거주시설</u> 4. <u>그 밖에 군수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u> ② 군수와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콘도, 휴양소 등의 이용권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와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2. 장제용품 등 장제비 지원

3.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비용 지원

4. 단체보장보험 비용 지원

5. 구내식당 운영 지원

6. 임산부 및 허리질환자 등을 위한 맞춤형 의자 지원

7. 출산축하 기념품 지원

8. 그 밖에 군수와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2. 장제비 지원

3.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비용 지원

4. 단체보장보험 비용 지원

5.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6. 임산부 및 허리질환자 등을 위한 맞춤형 의자 지원

7. 출산·생일 격려품 지원

8. 그 밖에 군수와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 시행

나. 관련조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안 제6조·제7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세출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합계
군비	50	255	255	255	255	1070

3. 향후 계획

가. 후생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나. 후생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2024년 본예산 편성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1차연도(2023년)

가. 무주택 소속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거주시설

1) 국유재산 사용료, 운영 및 소파 보수비: 50백만원

2. 2차연도(2024년~)

가. 무주택 소속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거주시설

1) 국유재산 사용료, 운영 및 소파 보수비: 13백만원

나. 소속직원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210백만원

다. 소속직원 생일 격려품 지원: 32백만원

작성자 행정과장 권 해 도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023-67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안 제3조·제4조)
- 다. 민원 처리 담당자의 지원, 지원 신청 및 결정을 정함(안 제5조·제6조)
- 라.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을 정함(안 제7조)
- 마. 사무의 위탁을 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3,000천원 추경 편성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4. 28.~5. 18.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거창군 소속직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지원)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해야 한다.

1. 치료 및 상담
2.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3. 법률상담 및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4. 교육 및 연수
5. 업무조정, 전보 등의 인사 조치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될 경우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의 타당성·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한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를 마련해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민원인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한
의료비·약제비 지원

나. 관련 조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지원(안 제5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1차 연도 (2023년)	2차 연도 (2024년)	3차 연도 (2025년)	4차 연도 (2026년)	5차 연도 (2027년)	합계
군비	의료비· 약제비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의료비·약제비 지원

가. 1차 연도: 300천원 × 10명 = 3,000천원

나. 2차~5차 연도: 300천원 × 10명 = 3,000천원

작성자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68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코로나 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완화를 위하여 상생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 법령 등 정비함(안 제명·제1조·제5조·제9조의3)

- 1) 인용 법령 변경: 「식품산업진흥법」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 띄어쓰기 및 약칭, 실효된 조문 삭제

나.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함(안 제9조의2)
(현행) 2022. 12. 31. ⇒ (변경) 2023. 12. 3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5. 8.~5. 3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를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로 한다.

제1조 “군세”를 “거창군 군세”로 한다.

제5조 제3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를 “수산식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9조의2 중 “2022년”을 “2023년”으로 한다.

제9조의3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23년 6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를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거창군 군세 감면조례</u>	<u>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u>군세</u> 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u>거창군 군세</u> 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2. (생략) 3. 「 <u>식품산업진흥법</u> 」 제19조의4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2. (현행과 같음) 3. 「 <u>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9조의2(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u>2022년</u> 1월부터 12월까지 건축물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 해당	제9조의2(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u>2023년</u> 1월부터 12월까지 건축물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에 별표에 따른 경감률을 곱한 금액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경감률은 임대료 인하율 구간에 따라 적용한다.

제9조의3(가산금 등에 대한 감면)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균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균세에 대한 가산금 등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제1항에서 “가산금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가산금

2. 「지방세징수법」 제31조에 따른 중가산금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현재 지방세를 3회(「지방세징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3회를 말한다) 이상 체납한 경우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에 별표에 따른 경감률을 곱한 금액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경감률은 임대료 인하율 구간에 따라 적용한다.

<삭 제>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으로 세입 한시적 감소

나. 관련 조문: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안 제9조의2)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나. 2022년 세입 감소: 약 200만원

재무과장 윤 광 식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69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압류하여 매각할 때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제15조)

- 1) 조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 ⇒ 제30조
- 2) 용어: 주민세 재산분 ⇒ 주민세 사업소분

나.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정함(안 제3조~제6조)

- 1) 전문매각기관의 요건, 신청, 선정, 선정 취소

다.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를 정함(안 제7조~제13조)

- 1) 매각대행 의뢰와 압류재산의 인도
- 2) 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 의뢰, 협의사항, 매각대행 해제요청
- 3) 매각재산 인도, 매각대금 수령, 매각대금 등의 배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제105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
- 2) 「지방세법」 제74조, 「지방세기본법」 제5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4. 21.~5. 1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군세”를 “거창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3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5조(종전 제3조) 중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3조부터 제14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전문매각기관의 요건) 영 제91조의11제1항제1호의 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이 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제4조(전문매각기관 신청) ① 전문매각기관 신청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3. 제3조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7일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이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가 보완 요구 기한까지 보완하지 않으면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 ③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제5조(전문매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을 1차 심사와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 후 선정한다.
- ② 1차 심사는 군세징수 소관 부서의 장이 제3조의 요건을 검증하여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선정한다.
 -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거창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매각의 전문성·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 선정은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복수의 기관을 선정한다. 이 경우 선정 사업자의 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는 비공개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 ⑥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 경우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⑦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은 선정 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6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군수는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업·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벌을 받거나 「지방세기본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 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매각대행의 의뢰와 압류재산의 인도) ① 군수는 법 제103조의3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을 전문매각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의뢰 물품의 감정가액에 상응하는 담보(「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91조의11제5항에 따라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할 때에는 압류조서와 실물상태를 인도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8조(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 의뢰)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제9조(전문매각기관의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군수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경우 20일 이내에 협의해야 한다.

③ 군수는 협의에 따라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군수에게 매각대행 의뢰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매각을 의뢰받은 예술품등에 대하여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2. 매각절차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제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예술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군수 또는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이 매각되어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납부한 경우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고 매수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군수는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 수수료 등의 명세서와 증명서류를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 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해야 한다.

제13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97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해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 전문매각기관에서 매각대행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2조(군세의 수납)</u>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u>군세</u>를 말한다. <u>제3조(채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u>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채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채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u>제4조(시행규칙)</u>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u>제2조(군세의 수납)</u>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u>영</u>”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u>거창군 군세</u>(이하 “<u>군세</u>”라 한다)를 말한다. <u>제15조(채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u>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채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채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u><삭 제></u> <u>제3조(전문매각기관의 요건)</u> 영 제91조의11제1항제1호의 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이 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

<신 설>

각이 가능할 것

<신 설>

제4조(전문매각기관 신청) ① 전문매각기관 신청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3. 제3조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7일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이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가 보완 요구 기한까지 보완하지 않으면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③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전문매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을 1차 심사와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 후 선정한다.

② 1차 심사는 군세징수 소관 부서의장이 제3조의 요건을 검증하여 서류심사 통과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거창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매각의 전문성·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 선정은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복수의 기관을 선정한다. 이 경우 선정 사업자의 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는 비공개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경우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⑦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은 선정 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군수는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업·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벌을 받거나 「지방세기본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 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 설>

제7조(매각대행의 의뢰와 압류재산의 인도) ① 군수는 법 제103조의3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을 전문매각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의뢰 물품의 감정가액에 상응하는 담보(「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91조의11제5항에 따라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

	<u>할 때에는 압류조서와 실물상태를 인도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u>
<u><신 설></u>	<u>제8조(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 의뢰)</u> <u>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9조(전문매각기관의 협의사항) ①</u> <u>전문매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군수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u> <u>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채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u> <u>2.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u> <u>3. 그 밖에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u>②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경우 20일 이내에 협의해야 한다.</u> <u>③ 군수는 협의에 따라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u>
<u><신 설></u>	<u>제10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군수에게 매각대행 의뢰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u> <u>1. 매각을 의뢰받은 예술품등에 대하여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u> <u>2. 매각절차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u> <u>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제요청에 따라야 한다.</u>
<u><신 설></u>	<u>제11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예술품</u>

등을 보관하고 있는 군수 또는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이 매각되어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납부한 경우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고 매수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군수는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 수수료 등의 명세서와 증명서류를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 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해야 한다.

<신 설>

제13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97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채납액에 충당해야 한다.

<u><신 설></u>	<u>제14조(비밀유지)</u> 전문매각기관에서 매각대행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70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신입생 유치를 위한 인구증가와 승강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한국 승강기대학교 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 규정하는 내용 추가에 따른 제명 및 목적 정비(안 제명·제1조)

나. 호 삭제 등에 따른 정비(안 제2조·제3조)

다. 등록금 지원을 정함(안 제4조)

1) 목적: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함

2) 범위: 수업료 및 입학금

3) 대상: 군에 주소를 둔 대학 입학생 및 재학생이고 성적 등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라. 등록금의 지원신청, 중복지원 제한을 정함(안 제5조·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300백만원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5. 10.~5. 3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불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를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한국승강기대학을 지원·육성”을 “한국승강기대학과 재학생을 지원”으로 한다.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용”을 “교육용”으로 한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삭제하고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등록금 지원) ① 군수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입학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학 등록에 필요한 수업료와 입학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산 범위에서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등록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대학에 다니는 학생일 것
2. 성적 등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

제5조(등록금 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등록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요건 등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등록금의 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등록금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액만큼 빼고 지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2023학년도 등록금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강기산업 기술인력의 교육, 훈련 및 양성을 위하여 학교법인 <u>한국승강기대학을 지원·육성</u>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삭제 2009.10.7> 3. <삭제 2009.10.7> 4.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이란 「사립학교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설립허가 및 인가를 받은 학교법인과 대학을 말한다. 5. “교육용 기본재산”이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확보한 교사·교지 및 교원을 말한다. 6. “수익용 기본재산”이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에 따라 확보한 재산을 말한다. 제3조(지원 등) ①~② (생략) ③ 대학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재산에 대하여 「<u>대학설립·운영 규정</u>」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u>규정에 따른 교육용</u> 기본재산 또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u><신 설></u>	<u>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강기산업 기술인력의 교육, 훈련 및 양성을 위하여 학교법인 <u>한국승강기대학과 재학생을 지원</u>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이란 「사립학교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설립허가 및 인가를 받은 학교법인과 대학을 말한다. 3. “교육용 기본재산”이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확보한 교사·교지 및 교원을 말한다. 4. “수익용 기본재산”이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에 따라 확보한 재산을 말한다. 제3조(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대학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재산에 대하여 <u>교육용</u> 기본재산 또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금 지원) ① 군수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입학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학 등록에 필요한 수업료와 입학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산 범위에서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등록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대학에 다니는 학생일 것 2. 성적 등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
<신 설>	제5조(등록금 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등록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요건 등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신 설>	제6조(등록금의 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등록금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액만큼 빼고 지원한다.
제4조(공유재산 지원) 군수는 대학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대학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삭 제>
제5조(사업계획과 예산) 대학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도 제출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보고 및 검사) ① 군수는 지원	<삭 제>

받은 재산의 운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대학에 요구하거나 군비의 지원과 관련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대학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한국승강기대학 재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시행 등

나. 관련조문: 등록금 지원(안 제4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세출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합계
군비	314	628	628	628	628	2,826

3. 향후 계획

가. 한국승강기대학 재학생 등록금 지원을 위한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나. 한국승강기대학 재학생 등록금 지원을 위한 2024년 본예산 편성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1차연도(2023년)

가. 신입생 등록금 지원: 314백만원

2. 2차연도(2024년~)

가. 신입생 및 재학생 등록금 지원: 628백만원

작성자 경제기업과장 이 정 희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71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을 하는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범위 확대함(안 제15조)

1) (현행) 최대 100억원까지 ⇒ (변경) 최대 200억원까지

나.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신설함(안 제19조)

1) 현행: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규정은 기반시설 사업지원과 중복 규정으로 삭제하고 규칙으로 구체화함

2) 신설: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을 하는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및 임차료 지원, 대규모 투자지원에 대한 특별규정

다. 이중지원 금지사유 구체화함(안 제38조)

1) 예외규정 신설: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받는 경우, 사업장 매입비 용자 지원받는 경우

2) 이중지원 금지사유 추가: 국가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대상 발생 시 확보예정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5. 4.~5. 2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되, 특정 성의 위촉직 위원수가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제6조제1항 중 “제척”을 “제척(除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피”를 “기피(忌避)”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회피”를 “회피(回避)”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개의”를 “개의(開議)”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기업지원 또는 투자유치 담당주사”를 “기업 또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100억원까지”를 “200억원까지”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9조(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① 군수는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을 하는 투자기업일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규모 투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문화콘텐츠산업을 하는 투자기업일 경우에는 건물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

로 정한다.

제21조 중 “군 의회”를 “군의회”로 한다.

제28조 중 “「거창군세 감면 조례」”를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이중지원 금지) ①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제24조에 따라 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조제1호에 따라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의 신설·증설 지원 대상 기업이 제11조제2항제3호의 사업장 매입비 융자 지원을 받는 경우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기업은 신청 당시의 조례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u>특정 성의 위촉직 위원수가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u> <u>1.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u> <u>2. 군 소속 공무원</u> 3.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의 인사 ④ (생략)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u>제척</u>된다. 1.~5. (생략)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u>기피</u>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u>회피</u>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u>위촉한다.</u> <u>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u> <u>2.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u> 3.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의 인사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u>제척(除斥)</u>된다. 1.~5. (현행과 같음)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u>기피(忌避)</u>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u>회피(回避)</u>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③ (생략)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생략)

제8조(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업지원 또는 투자유치 담당주사가 된다.

③·④ (생략)

제15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100억원까지(도비 포함한다)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관광사업(「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과 기업연수원을 말한다. 다만, 골프장은 제외한다)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계비, 용역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보조금 및 기금 등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기업유치 특별지원) 군수는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에 따른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③ (생략)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8조(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업 또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15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00억원까지(도비 포함한다)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① 군수는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을 하는 투자기업일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규모 투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문화콘텐츠산업을 하는 투자기업일 경우에는 건물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기업유치 특별지원) 군수는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에 따른

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거창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38조(이중지원 금지)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38조(이중지원 금지) ①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제24조에 따라 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조 제1호에 따라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의 신설·증설 지원 대상 기업이 제11조제2항제3호의 사업장 매입비 융자 지원을 받는 경우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1) 금액확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 2) 신설: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나. 관련 조문: 안 제15조·제19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지원대상 및 범위를 예측할 수 없어 비용추계 작성 이 어려움, 지원대상 발생 시 예산 확보예정

작성자 경제기업과장 이 정 희

거창군 문화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023-72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거창군 문화시설 등과 군에서 개최되는 축제 또는 행사의 장소에 방문하는 군민과 방문객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할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문화체육활동 증진과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순환버스 운영, 노선 및 운행범위, 이용대상자, 목적 외 운행금지를 정함(안 제3조~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2)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순환버스 운영사업 발생 시 예산확보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및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5. 1.~5. 2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법제처 자치법규입법컨설팅: 전부반영

거창군 문화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문화시설 등을 이용하거나 방문하는 군민과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시설등”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문화·체육·문화재·기념 시설 등 또는 군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행사 장소를 말한다.
2. “순환버스”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문화시설등에 대해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제3조(순환버스 운영) ① 군수는 문화시설등을 이용하거나 방문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노선 및 운행범위) 군수는 문화시설등의 위치·성격,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순환버스의 노선 및 운행범위를 정해야 한다.

제5조(이용대상자) 군수는 이용자만 순환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목적 외 운행금지)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순환버스 운행 및 이용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문화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순환버스 운영 또는 위탁

나. 관련 조문: 안 제3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순환버스 운영사업 시행 시 시행부서에서 예산 확보예정

작성자 문화관광과장 조 호 경

거창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3-73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초고령 사회 속에서 기존의 노인복지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어르신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기본이념,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안 제1조~제5조)
-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정함(안 제6조·제7조)
- 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등을 정함(안 제8조~제16조)
- 라. 위원회를 정함(안 제17조~제25조)
- 마. 모니터단을 정함(안 제26조~제2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2) 「노인복지법」 제4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나. 예산조치: 2023년 예산 5천만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4. 26.~5. 16.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불임
-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안 제8조)

거창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을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②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군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4조(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군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고령친화도시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 및 추진방법
3. 연도별 추진계획 및 세부 추진사업
4.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군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조사 및 연구) 군수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해야 한다. 다만, 조사 및 연구 시 노인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환경 편의증진) 군수는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업

제10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노인복지시설 등을 확충하고 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일자리지원기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1조(사회·문화 활동 참여의 장려) 군수는 노인이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업

제12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군수는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2. 노인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3.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4.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5.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13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군수는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2.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4.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5.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업

제14조(건강증진) 군수는 노인의 건강한 심신과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지원
2.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3.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4.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업

제15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군수는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 회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 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제16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군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홍보를 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7조(고령친화도시조성 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심의 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고령친화도시조성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3.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고령친화도시 업무 소관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3. 노인정책 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 중 위원회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령친화도시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②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둬야 한다.

제2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고령친화도시조성 모니터단)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거창군 고령친화도시조성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조사·점검
2. 일상생활에서 노인의 불편사항 발굴
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 건의
4.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모니터단 구성) ① 모니터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단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한다.

1. 도시계획, 교통, 의료,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2.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제28조(실비보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원에게 모니터단 활동에 실제로 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사업 시행 등
- 나. 관련조문: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6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세출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합계
군비	50	10	10	50	10	130

3. 향후 계획

- 가.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반사업 추진을 위한 2024년 본예산 편성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1. 2023년: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50백만원
- 2. 2024년~2025년: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반사업 추진 등 10백만원
- 3. 2026년: 고령친화도시 재인증 연구용역 및 기반사업 추진 50백만원
- 4. 2027년: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반사업 추진 등 10백만원

작성자 행복나눔과장 신 동 범

거창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023-74	제 출 자	거창군수
----------	---------	-------	------

1. 제안 이유

치매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거창군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전문적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립 노인요양시설을 신축(2023. 12 준공 예정)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나.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위치를 정함(안 제2조)
- 다. 위탁 운영을 정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제35조, 「지방자치법」 제161조
-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800백만원 확보예정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4. 26.~5. 16.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거창군 공립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공립 노인요양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노인요양시설은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2997에 둔다.

제3조(위탁 운영) 군수는 노인요양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공립 노인요양시설 운영

나. 관련조문: 설치 및 위치(안 제2조), 위탁 운영(안 제3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국비	50	-	-	-	-	50
도비	35	-	-	-	-	35
군비	715	200	-	-	-	915

※ 법령에 따른 공모사업을 통한 재정지원사업은 제외

3. 관련 의견

공립 노인요양시설의 시설 운영을 위한 장비보강 사업비 편성
및 시설 개원(2024. 3.) 후 정상화 운영(정원 100명 입소)
이전까지 운영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가. 2023년: 공립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800백만원

나. 2024년: 시설 운영비 일시 지원 200백만원

작성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75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지역보건법」 개정(2023. 3. 28. 시행)으로 정보 파기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그 기준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사항, 재기재 등 정비함(안 제1조·제2조·제4조·별표)

나. 정보 파기 위반 과태료 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 1) 대상: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않은 자
- 2) 금액: 1차 1천만원, 2차 2천만원, 3차 3천만원
- 3) 근거: 「지역보건법」 제3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제3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5. 12.~5. 3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을 “「지역보건법」 제34조 제3항에서 위임된”으로 “필요한”을 “관한”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중 “과태료”를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u>필요한</u>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①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② 과태료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u>관한</u>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 제>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삭 제>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가지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서 각각 부과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3차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차위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u>법조문</u>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1,000	2,000	3,000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1호	100	200	300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76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안전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육군 제8962부대의 통폐합으로 인한 기관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당연직 위원 조직개편 사항 반영함(안 제3조)

- 1) 현행: 육군 제8962부대 6대대장
- 2) 변경: 육군 제8962부대 3대대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5. 4.~5. 24.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중 “6대대장”을 “3대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군수 2. 거창경찰서장 3.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4. 거창소방서장 5. 육군 제8962부대 6대대장 6. 군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이나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군수 2. 거창경찰서장 3.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4. 거창소방서장 5. 육군 제8962부대 3대대장 6. 군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이나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77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행정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여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정비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제때에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군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변경함(안 제3조)

1) 신설: 총괄조정관

2) 구성 및 임무 변경: 통제관 및 담당관

나. 실무반 편성기준, 대책본부 구성도를 변경함(안 별표 1~별표 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2)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5. 4.~5. 2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재난 예보·경보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2. 차장: 부군수
3. 총괄조정관: 안전건설국장
4. 통제관: 재난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 대응·복구를 주관하는 국장·소장 또는 안전총괄과장
5. 담당관: 재난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② 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4.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5.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제4조 중 “차장·통제관·담당관”을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 제2항)제4호 중 “본부장 등”을 “본부장등”으로 한다.

-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 ② 본부장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제6조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과 제8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별표 4, 별표 5의 비상단계에 따른 비상근무 실시
 4.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분석과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5.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제5항 중 “개 의”를 “개 의(開議)”로 한다.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 중 “본부장은”을 “군수는”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재난 예보·경보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2. 차장: 부군수 3. 통제관: 재난 총괄부서의 장 4. 담당관: 재난종류에 따른 재난수습부서의 장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2. 차장: 부군수 3. 총괄조정관: 안전건설국장 4. 통제관: 재난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 대응·복구를 주관하는 국장·소장 또는 안전총괄과장 5. 담당관: 재난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② 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보좌 3. 통제관: 재난상황총괄,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4. 담당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의 재난 상황관리, 실무반 임무 총괄	② 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 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4.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5.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차장·통제관·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	제7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

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과 제8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별표 4, 별표 5의 비상단계에 따른 비상근무 실시
4.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분석과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5.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②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군 소속 관련부서의 장과 각 실무반장
3. 해당 재난관련 관계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서 “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제6조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과 제8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별표 4, 별표 5의 비상단계에 따른 비상근무 실시
4.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분석과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5.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군 소속 관련부서의 장과 각 실무반장
3. 해당 재난관련 관계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④ (생략)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2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본부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4. 그 밖에 본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④ (현행과 같음)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2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군수는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군수는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별표 1] 실무반의 임무(제3조제3항 관련)

자연재난 실무반별 업무

○ 조직 및 담당업무

구 분		담 당 업 무	담당부서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상황 관 리 총 괄 반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2)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3)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4)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5) 본부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6)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7) 화상회의 준비·운영 8)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안전 총괄과 <u>재난 수습 주관부서</u>
	상황보고서 작성팀	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3)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가) 태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 인 홍수정보 파악 나)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다) 지진: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4)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5)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6)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7)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8) TV 방송 모니터링 9)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안전 총괄과 재난 수습 주관부서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1)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2)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3)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4) <u>주민대피 지시·총괄 및 대피현황 관리</u> 5) <u>비상근무 단계 결정 및 비상근무 발령·해지</u> 6)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7)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8)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9) <u>상향근무자 근무명령 및 국가재난관리시스템(NIMS) 교육등시스템운영지원</u>	안전 총괄과
	행정지원팀	1) 주요 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2) <u>비상소집 및 복무단속</u> 3) <u>공무원 동원인력 급식 총괄</u> 4) 본부장·차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행정과

구 분		담 당 업 무	담당부서
협 업 기 능 반	긴급생활안정지원반	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2)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 3)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4)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5)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6)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7) <u>사망자 장례 대책</u>	복지 정책과 <u>행복 나눔과</u>
	재난현장환경정비반	1)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u>재난쓰레기</u>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운영의 지도·확인	환경과
	긴급통신지원반	1) <u>상황실 통신·전산장비 운영 및 지원</u> 2)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4)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안전 총괄과
	시설피해응급복구반	1) 공공·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2) 공공·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문화관광과 산림과 <u>건설교통과</u>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1)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2)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u>경제 기업과</u>
	재난수습홍보반	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텔레비전·라디오·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3)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4) 언론발표 준비·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5)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6)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7)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8)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9) 현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습본부, 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u>기획예산 담당관</u>

구 분		담 당 업 무	담당부서
협 업 기 능 반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1)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 운영 2)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가동 3)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4) 장비·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5)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6)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안전 총괄과
	교통대책반	1)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2) 육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3) 교통두절구간(도로, 항공) 실태 파악 보고 4)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u>건설</u> <u>교통과</u>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행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6)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보건소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1)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2)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3)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4)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복지 정책과
	사회질서 유지반	1)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3)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4)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5)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거창 경찰서
	수색, 구조·구급반	1)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2)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5)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거창 소방서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		관계 부서 및 유관기관별 12개 협업 기능·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거창교육지원청, 육군 제8962부대 3대대,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북부지사, 한국전력공사 거창지사, KT거창지점,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부산지방기상청 및 그 밖의 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역자율방재단 등 단체)	

사회재난 실무반별 업무

○ 조직 및 담당업무

구 분		담당 업무	담당부서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담당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의 재난상황관리, 실무반 임무 총괄	
상황관리총괄반	상황관리 총괄팀	1)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2)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3) 상황판단회의 및 보고회 자료 준비 4) <u>주민대피 지시·총괄 및 대피현황 관리</u> 5) <u>비상근무 발령·해지</u> 6) <u>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및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교육 등 시스템 운영 지원</u>	안전총괄과
	수습상황 파악팀	1)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2)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3)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4) 지역사고수습본부, 거창군 대책본부, 긴급구조 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5)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6)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7)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안전총괄과 재난수습 주관부서
	<u>행정지원팀</u>	1) <u>주요 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u> 2) <u>비상소집 및 복무단속</u> 3) <u>공무원 동원인력 급식 총괄</u> 3) 본부장·차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u>행정과</u>
협업기능반	긴급생활안정지원반	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2)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 3)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4)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5)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6)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7) <u>사망자 장례 대책</u>	복지정책과 <u>행복나눔과</u>
	재난현장환경정비반	1)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운영의 지도·확인	환경과
	긴급통신지원반	1) <u>상황실 통신·전산장비 운영 및 지원</u> 2)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4)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안전총괄과
	시설피해응급복구반	1) 공공·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2) 공공·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문화관광과 산림과 <u>건설교통과</u>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구 분		담당 업무	담당부서
협 업 기 능 반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1)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2)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u>경제기업과</u>
	재난수습홍보반	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텔레비전·라디오·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3)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4) 언론발표 준비·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5)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6)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7)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8)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9) 현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습본부, 대책본부의 재난수습 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u>기획예산 담당관</u>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1)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 원공동활용시스템 운영 2)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Sharing System: DRSS)가동 3)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4) 장비·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5)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6)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안전총괄과
	교통대책반	1)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2) 육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3) 교통두절구간(도로, 항공) 실태 파악 보고 4)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u>건설교통과</u>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6)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보건소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1)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2)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3)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4)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복지정책과

구 분		담당 업무	담당부서
협 업 기 능 반	사회질서 유지반	1)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3)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4)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5)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거창 경찰서
	수색, 구조·구급반	1)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2)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5)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거창 소방서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		관계 부서 및 유관기관별 12개 협업 기능·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거창교육지원청, 육군 제8962부대 3대대,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북부지사, 한국전력공사 거창지사, KT거창지점,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부산지방기상청 및 그 밖의 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역자율방재단 등 단체)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3조제3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행정안전부	가. 정부중요시설 및 <u>공공청사 사고</u> 나.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재무과 안전총괄과
문화체육관광부	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체육시설사업소 문화관광과
농림축산식품부	가. 가축 질병	농업기술센터
	나. 저수지 사고	<u>건설교통과</u>
산업통상자원부	가. 가스 수급, 가스 누출 사고 나. 전력 사고	<u>경제기업과</u>
보건복지부	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	보건소
환경부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다. 황사 및 미세먼지 마. <u>식용수(지방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u>	환경과 " " <u>수도사업소</u>
고용노동부	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경제기업과
국토교통부	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나. 도로터널 사고 다. 육상화물운송 사고 라.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가. <u>건설교통과</u> 나. " 다. " 라. 도시건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원자력안전 사고 나. 인접 지역 방사능 누출 사고	안전총괄과
<u>소방청</u>	<u>가. 화재·위험물 사고</u> <u>나.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u>	<u>안전총괄과</u>
문화재청	가.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관광과
산림청	가. 산불 나. 산사태	산림과

비고: 공동구·~~위험물 사고~~ 등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 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3]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6조제1항제1호관련)

□ 상시대비단계

1. 가동기준: 평상시

2. 실무반 편성

통 제 관	<u>안전총괄과장</u>
담 당 관	재난수습 부서의 <u>과장</u>
실 무 반	주간: 안전총괄과 야간 및 공휴일: 당직근무자

비고: 1. 안전총괄과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을 파견받아 실무반원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실무반에서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상황전파메신저(NDMS)를 관리하며, 재난상황 시 긴급재난문자시스템(CBS)을 통하여 상황전파를 할 수 있다.

□ 사전대비단계

1. 가동기준: 호우·대설 예비특보 등 비상단계 전 기상정보 발표 시

2. 실무반 편성

통 제 관	<u>안전총괄과장</u>
담 당 관	재난수습 부서의 <u>과장</u>
실 무 반	안전총괄과 1명

비고: 1. 사전대비단계는 재난안전상황실 및 대책본부의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하되, 소관분야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시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파견 요청 시 즉시 파견하여 24시간 상황근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안전총괄과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수습 부서의 직원을 파견받아 실무반원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비상근무 인원: 실무반 1명, 필요시 각 읍면 1명 비상대기 근무

[별표 4]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제6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

□ 비상 I 단계

1. 가동기준

- 가. 호우·대설: 기상 종합정보 중 “주의보” 발표 시
- 나. 태풍: 예비특보 발표 시
- 다. 그 밖의 지진 및 화산 등: 규모 4.0이상 5.0미만 지진통보 또는 화산재주의보 발표 시 등

2. 실무반 편성: 14명+ a

총괄조정관		○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안전건설국장			
통 제 관			
주관부서의 국장소장 또는		○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안전총괄과장			
담 당 관		○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근무인원		총 14+a명	
반 장(1명)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실무반	상황관리 총괄반 (3명)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안전총괄과(1명), 재난수습 주관부서(1명)
		행정지원팀	행정과(1명)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 비상소집, 공무원 동원인력 급식 등
	협업기능반(10+a명)		기획예산담당관(a), 복지정책과(1+a), 행복나눔과(1+a), 경제기업과(a), 문화관광과(1+a), 안전총괄과(1+a), 산림과(1+a), 환경과(a), 건설교통과(2+a), 도시건축과(1+a), 농업기술센터(1+a), 보건소(a), 수도사업소(1+a), 거창경찰서(a), 거창소방서(a)

다.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비상근무 인원: 상황판단 회의에 따라 실무반 14명, 읍면 각 2명 비상대기 근무를 편성·운영할 수 있음.

□ 비상 2단계

1. 가동기준

- 가. 호우·대설: 기상 종합정보 중 “경보” 발표 시
- 나. 태풍: 태풍주의보 발령시,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한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 다. 그 밖의 사항(지진 및 화산 등): 규모 5.0이상 지진통보, 사망자 및 실종자 발생 또는 화산재경보 발표 시 등

2. 실무반 편성: 20명+α+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총괄조정관		○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안전건설국장				
통제관		○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주관부서의 국장소장 또는 안전총괄과장				
담당관		○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재난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근무인원		총 20+ α+ β명		
반 장(1명)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실 무 반	상황관리 총괄반 (3명)	재난정보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안전총괄과(1명), 재난수습 주관부서(1명)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 상황관리총괄, 재난상황분석·판단시스템 운영, 대책본부 운영 행정지원, 상황실 장비운영, 재난관리시스템(NDMS) 운영 지원	
		상황보고서 작성팀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행정지원팀	행정과(1명)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 비상소집, 공무원 동원인력 급식 등	
	협업기능반(16+ α명)		기획예산담당관(α), 복지정책과(2+ α), 행복나눔과(1+ α), 경제기업과(1+ α), 문화관광과(1+ α), 안전총괄과(2+ α), 산림과(1+ α), 환경과(α), 건설교통과(3+ α), 도시건축과(1+ α), 농업기술센터(2+ α), 보건소(1+ α), 수도사업소(1+ α), 거창경찰서(α), 거창소방서(α)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β)		-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파견 직원(한국전력공사 거창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등)	

다. 근무방법

-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비상근무 인원: 상황판단 회의에 따라 전 공무원의 3분의1까지 비상대기 근무를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본부장은 공무원의 2분의1까지 비상대기 근무를 명할 수 있다.

□ 비상 3단계

1. 가동기준

- 가. 호우·대설: 기상 종합정보 중 “경보” 발표 시, 또는 광역적인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 나. 태풍: “태풍경보” 발표 시, 또는 광역적인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 다. 그 밖의 사항(지진 및 화산 등): 규모 5.0이상 지진 발생이 통보되고, 광역적인 피해 발생 시(복합재난 등),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등

2. 실무반 편성: 25명+a+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총괄조정관		○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안전건설국장			
통제관			
주관부서의 국장소장 또는 안전총괄과장		○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담당관		○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근무인원		총 25+ α+ β명	
반 장(1명)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실무반	상황관리총괄반 (4+ α명)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안전총괄과(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1명)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 상황관리총괄, 재난상황분석·판단시스템 운영, 대책본부 운영 행정지원, 상황실 장비운영, 재난관리시스템(NDMS) 운영 지원
		상황보고서 작성팀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행정지원팀	
	협업기능반(20+ α명)		행정과(1+ α명) ※ 주요인사 방문시 의견, 비상소집, 공무원 동원인력 급식 등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β)		기획예산담당관(1+ α), 복지정책과(2+ α), 행복나눔과(1+ α), 경제기업과(1+ α), 문화관광과(1+ α), 안전총괄과(2+ α), 산림과(1+ α), 환경과(1+ α), 건설교통과(4+ α), 도시건축과(1+ α), 농업기술센터(3+ α), 보건소(1+ α), 수도사업소(1+ α), 거창경찰서(α), 거창소방서(α) -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파견 직원(한국전력공사 거창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등)	

다. 근무방법

-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행정지원팀: 주근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비상근무 인원: 상황판단 회의에 따라 전 공무원의 2분의1까지 비상대기 근무를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본부장은 공무원의 전 직원 비상대기 근무를 명할 수 있다.

[별표 5]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6조제1항제2호나목 관련)

- 가동기준: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나.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 실무반 편성: $20 + \alpha + \beta$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 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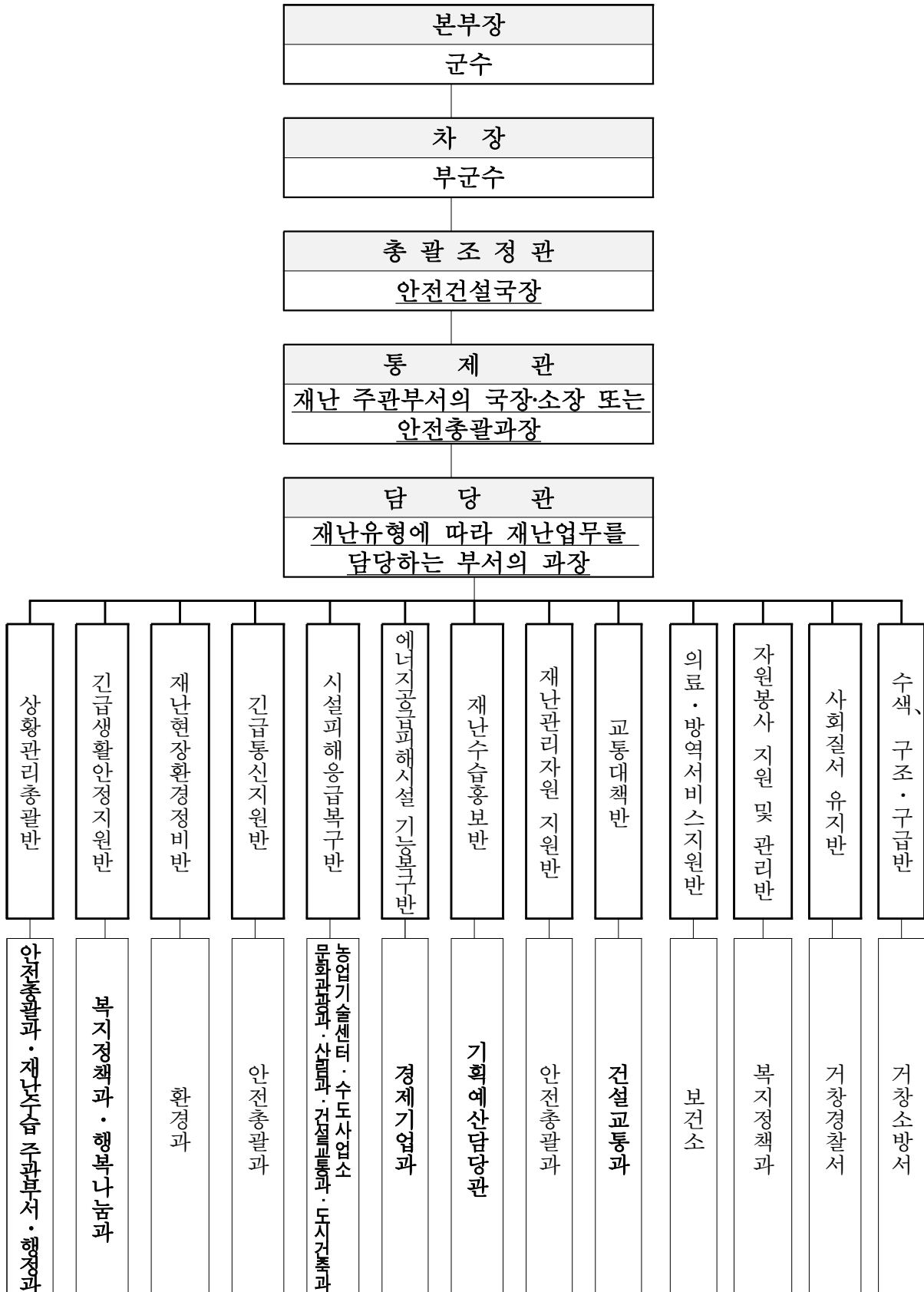
총괄조정관		○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안전건설국장			
통제관		○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주관부서의 국장소장 또는 안전총괄과장			
담당관		○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근무인원		총 20+ α+ β+ γ명	
반 장(1명)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실 무 반	상황관리 총괄반 (3명)	상황관리총괄팀	안전총괄과(1명), 재난수습 주관부서(1명)
		수습상황파악팀	
		행정지원팀	행정과(1명)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 비상소집, 공무원 동원인력 급식 등
	협업기능반(16+ α)		기획예산담당관(α), 복지정책과(2+ α), 행복나눔과(1+ α), 경제기업과(1+ α), 문화관광과(1+ α), 안전총괄과(2+ α), 산림과(1+ α), 환경과(α), 건설교통과(3+ α), 도시건축과(1+ α), 농업기술센터(2+ α), 보건소(1+ α), 수도사업소(1+ α), 거창경찰서(α), 거창소방서(α)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β)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파견 직원(한국전력공사, 한국 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현장지원반(γ)		해당 재난관리 부서 소속 직원

- ※ 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현장지원반: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비상근무 인원: 상황판단 회의에 따라 전 공무원의 3분의1까지 비상대기 근무를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본부장은 공무원의 2분의1까지 비상대기 근무를 명할 수 있다.

[별표 6]

대책본부 구성도(제6조제2항 관련)



거창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3-78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군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체육활동 등 옥외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도시 거창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 책무를 정함(안 제3조~제5조)
- 다. 안전관리계획을 정함(안 제6조)
- 라. 안전점검과 안전조치를 정함(안 제7조·제8조)
- 마. 안전관리요원, 지원요청을 정함(안 제9조·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30조·제31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4. 17.~5. 8.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5) 참고: 법제처 의견제시사례 의견21-0037

거창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체육활동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주최”란 옥외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4. “주관”이란 대가의 유무와 상관 없이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
 3.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군민이 자발적으로 5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
- ② 제1항 각 호의 옥외행사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500명 미만의 참여가 예상되는 옥외행사 중

안전관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적용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군민은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 ① 군이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일 경우 군수는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옥외행사 개최일 3주 전까지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거창경찰서 및 거창소방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일시, 장소, 주최·주관, 주요내용, 참가예상 인원 등을 포함한다)
2. 옥외행사 장소·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요원의 확보, 배치계획 및 임무
4. 장소 및 주변 환경, 행사 시설 등 현장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5. 행사 장소 및 그 주변 통행로의 공간 수용능력과 초과 군중 밀집 시의 대처에 관한 사항
6. 화재 등 각종 사고 유형별 예방 및 인명 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7. 비상시 대응요령 및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8. 재난보상보험 가입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해당 기관 및 단체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군

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2.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3. 군에서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옥외행사의 경우
- ④ 군수는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7조(안전점검)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행사 개최 1일 전까지 옥외행사의 장소 및 그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6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군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요청이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시에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거창소방서 및 거창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안전조치) ① 군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옥외행사: 즉시 안전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등에게 시정 요청
2. 제6조제3항에 따른 옥외행사: 주최·주관하는 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하고 옥외행사 취소를 권고하는 등의 안전지도

② 군수는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

한하거나 해당 옥외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1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옥외행사 전 또는 옥외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옥외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등

제9조(안전관리요원)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할 것
2. 안전관리요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모자, 복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할 것

③ 군수는 제6조제3항의 옥외행사일 경우에는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에게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요청) ① 군수는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거창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구호를 위해 거창소방서 및 군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79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고, 기관 명칭 등을 현행화 하여 효율적인 통합방위체계를 구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나.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정비(안 제3조제2항)

1) 신설: 거창구치소장

2) 위원 소속기관 명칭변경 등 반영

가) 육군 제8962부대 6대대장 ⇒ 육군 제8962부대 3대대장

나) 339군사안보지원부대 안보지원관 ⇒ 353방첩부대 방첩관

다) 국가정보원 관계자 ⇒ 국가정보원 경남지부 거창담당관

다. 위촉직 위원 임기 신설함(안 제3조제9항)

라. 통합방위 지원본부 소재지 현행화함(안 제4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통합방위법」 제5조,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5. 4.~5. 2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운영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종전 제1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2. 육군 제8962부대 3대대장
3. 353방첩부대 방첩관
4. 국가정보원 경남지부 거창담당관
7. 거창구치소장

제3조제5항부터 제7항을 제6항부터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8항(종전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화상회의의 방식(전자투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⑧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발언을 할 수 있다.

1. 총무 및 민방위담당 간사: 군 소속 협의회담당 과장
2. 작전담당 간사

가. 육군 제8962부대 3대대 작전담당 과장

나. 거창경찰서 경비담당 과장

3. 예비군담당 간사: 육군 제8962부대 3대대 동원담당 과장

⑨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3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위원 임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최초의 임기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u>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거창군의회 의장 2. 육군 제8962부대 6대대장 3. 339군사안보지원부대 안보지원관 4. 국가정보원 관계자 5.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장 6. 거창경찰서장 <신 설> 7. 경남서부보훈지청장 8.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9. 거창소방서장 10. 거창군 재향군인회장 11.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③ (생략)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⑤·⑥ (생략) ⑦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	<u>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운영 조례</u>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거창군의회 의장 2. 육군 제8962부대 3대대장 3. 353방첩부대 방첩관 4. 국가정보원 경남지부 거창담당관 5.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장 6. 거창경찰서장 7. 거창구치소장 8. 경남서부보훈지청장 9.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10. 거창소방서장 11. 거창군 재향군인회장 12.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현행과 같음)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u>협의회의 회의는 화상회의의 방식(전자투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u> ⑥·⑦ (현행과 같음) ⑧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은 없다.

1. 총무 및 민방위담당 간사: 안전총괄
과장

2. 작전담당 간사

가. 육군 제8962부대 6대대 작전장교

나. 거창경찰서 정보보안과장

3. 예비군담당 간사: 육군 제8962부대
6대대 동원장교

<신 설>

제4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③ (생 략)

④ 군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군 본청
에,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읍·면
의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에 둔다.

1. 총무 및 민방위담당 간사: 군 소속
협의회담당 과장

2. 작전담당 간사

가. 육군 제8962부대 3대대 작전담당
과장

나. 거창경찰서 경비담당 과장

3. 예비군담당 간사: 육군 제8962부대
3대대 동원담당 과장

⑨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③ (현행과 같음)

④ 군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군 본청
에,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읍·면
의 행정복지센터에 둔다.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80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지원 기간 및 금액을 확대하여 오염물질 농도가 일반 하수처리구역과 차이가 없음에도 일반 하수처리구역 하수도사용자에 비하여 사용료 부담이 컸던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신규기업 유치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지원 기간 및 금액 확대(안 제11조)

- 1) 현행: 가동률 100분의 60이 될 때까지 한시적, 사용료 일부 지원
- 2) 변경: 사용료 지원의 기간 제한 없이 사용료 일부 지원, 지원의 산정기준 변경으로 지원금액 확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3
-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3조
- 3) 「지방자치법」 제29조·제153조·제156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5. 3.~5. 23.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불임
- 5)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사용료 지원) 군수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하는 사용료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11조(사용료 부담지원) 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입주지연으로 인한 초기입주 사업자의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사용료 일부를 제2항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가동률이 100분의 60이 될 때까지로 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u>	<u>제11조(사용료 지원) 군수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과기준을 일반 하수도 사용료 단가로 적용함에 따른 세입감소

나. 관련 조문: 사용료 지원(안 제11조)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2022년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과내역 기준

1) 매년 처리시설 유입량 증가분을 10퍼센트 수준으로 추정하여 비용 산출

2) 1차 연도(2023년)의 경우 개정안 공포 시기를 고려하여 7월부터 12월까지 총 6개월간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비용 산출

나. 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세출	1차 연도 (2023년)	2차 연도 (2024년)	3차 연도 (2025년)	4차 연도 (2026년)	5차 연도 (2027년)	합계
세입감소 금액	64,937	140,133	154,147	169,560	186,516	715,293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1차 연도(2023년): 2022년 하반기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과내역

가. 현행 예상 부과금액(2023.7.~2023.12.): 78,247천원

나. 개정 예상 부과금액(2023.7.~2023.12.): 13,310천원

2. 2차 연도 이후: 2022년 전체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과내역 기준 유입량 증가분 10퍼센트수준 반영

작성자 수도사업소장 이 재 훈